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'97. 8. 20

나. 회부일자 : '97. 8. 20

3. 제안이유

-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일부사무의 위임으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- 노동조합 및 노동관련 조정법 개정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 업무의 노동부로 이관됨에 따른 관례조문 삭제
-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
- 석도·궤도사업 업무의 일원화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장·군수·출장소장에게 위임.
- 조직개편에 따른 관장부서 정비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,

이는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사무의 위임으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

그 주요골자로는

첫째,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따라 경제과에서 관장하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업무가 노동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업무인 일련번호 1-4, 5, 6호를 삭제하고

둘째,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공업과 소관업무로 되어있는 일련번호 제2호중 "전기안전 관련규정 제출수리 및 변경명령"을 "전기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"으로 하며

셋째,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문화체육과 사무중 일련번호 제1, 3, 4호를 각 1, 2, 3호로 하여 문화예술과에서, 일련번호 제2호는 1호로 하여 체육청소년과에서 취급토록 관장부서와 사무를 정비하고

넷째, 삭도·궤도법의 규정에 의거 교통행정과 사무중 일련번호 1-47호를 신설함과 동시에 삭도·궤도사업 업무의 일원화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장·군수·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

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